|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국무원 령 제613호《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를 2011년 11월 30일 국무원 제18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2011년 12월 20일**제1장 총 칙****제1조** 입찰응찰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이하 입찰응찰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입찰응찰법 제3조에서 공사 건설프로젝트라 함은 공사 및 공사 건설과 관련한 화물, 서비스를 말한다. 전항에서 공사라 함은 건축물과 구조물의 신건, 개축, 확장 및 그와 관련한 인테리어, 철거, 수선 등을 말하고, 공사 건설과 관련한 화물이라 함은 공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구성부분과 공사의 기본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포함하고, 공사 건설과 관련한 서비스라 함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답사, 설계, 감리 등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공사 건설프로젝트의 구체 범위와 규모, 표준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세에서 전국 입찰응찰활동을 지도, 조율하고 국가의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 및 정보화부서,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 교통운수부서, 철도부서, 수리부서, 상무부서 등에서는 규정 직책분공에 따라 관련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입찰응찰활동을 지도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부서에서는 규정된 직책분공에 따라 입찰응찰활동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입찰응찰황동 중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산하 부서들의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감독직책 분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재정부서에서 법에 따라 입찰응찰 공사 건설프로젝트 정부조달예산 집행상황과 정부조달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감찰기관에서 입찰응찰활동 관련 감찰대상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제5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통일적으로 규범화 한 입찰응찰 거래소를 설치하여 입찰응찰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찰응찰 거래소는 행정 감독부서와 예속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서는 정보망을 통한 전자 입찰응찰을 제창한다. **제6조**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국가 공직자의 어떠한 불법간섭도 금지한다. **제2장 입 찰****제7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의 인가, 확인 수속을 이행하고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그 입찰범위, 입찰방식, 입찰 조직형태를 프로젝트 심사인가, 확인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인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심사인가, 확인부서에서는 적시에 심사인가, 확인하여 확정한 입찰범위, 입찰방식, 입찰 조직형태를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국유자금이 지주지위나 주도지위에 있고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입찰을 할 수 있다. (1) 기술이 복잡하고 특수요구가 있거나 자연환경의 제한으로 소수의 응찰희망자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2) 프로젝트 계약비용에서 공개입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분한 상황.전항 제2호에서 지적한 상황 중 이 규정 제7조 규정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심사인가, 확인부서에서 프로젝트 심사인가, 확인 시에 결정하고 여타 프로젝트는 입찰자가 관련 행정감독부서에 신고하여 결정하게 한다. **제9조** 입찰응찰법 제66조에서 정한 입찰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도 입찰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일 적절한 특허나 노하우를 채용해야만 하는 상황(2) 조달인이 법에 따라 자체로 건설하고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상황 (3) 이미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 독점 경영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자체로 건설하고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상황(4) 원 낙찰자에게서 공사, 화물 또는 서비스를 매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이나 설비의 기능요구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특별상황. 입찰자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한 경우 입찰응찰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입찰회피에 속한다. **제10조** 입찰응찰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입찰자가 스스로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응찰평가를 주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입찰자에게 입찰 프로젝트의 규모와 그 복잡성에 수응할 수 있는 기술, 경제 등 면의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1조** 입찰대리기구의 자격은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인정한다. 국무원 주택 및 도농건설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등 부서에서 규정한 직책분공에 따라 입찰대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입찰대리기구에는 일정 수의 입찰직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원에 있어야 한다. 입찰직업자격 취득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 사회부서에서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3조** 입찰 대리기구에서는 그 자격이 허락되고 입찰자가 의뢰한 범위에서 입찰대리 업무를 전개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불법간섭하지 못한다. 입찰업무를 대리하는 입찰대리기구는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입찰자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대리구가 자기가 대리하는 입찰프로젝트에 응찰하거나 응찰을 대리해서는 아니 되며 그가 대리하는 입찰프로젝트의 응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입찰대리기구에서 자격증을 개찬, 대출, 차출,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입찰자는 입찰을 의뢰하는 입찰대리기구와 의뢰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에서 약정하는 수취비용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공개 입찰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자가 자격 예심방법을 취하여 응찰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 자격 예심공고를 내고 자격 예심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예심공고와 입찰공고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합법적으로 지정한 미디어에 발표해야 한다. 각종 미디어에 발표한, 동일 입찰프로젝트의 자격 예심공고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지정된 미디어에 발표하는,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내 자격 예심공공, 입찰공고에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예심서류와 입찰서류 작성 시에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관련 행정감독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 표준문의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제16조** 입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요청서에서 규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매출해야 한다.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 매출기간이 5일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찰자가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요청서류를 매출하면서 수취하는 비용은 인쇄, 우편 원가 지출에 한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입찰자는 자격 예심 신고서류 제출일시를 합리하게 정해야 한다.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자격 예심 신고서류 제출일시는 자격 예심서류 매출 종료일로부터 5일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자격 예심은 자격 예심서류에 명기한 표준과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유자금이 지주지위나 주도지위를 차지하고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자가 자격 예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예심신고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자격 심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은 입찰 평가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자격 예심 완료 후 입찰자는 즉시 자격 예심 신고인에게 자격 예심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자격 예심에 통과하지 못한 신고인은 응찰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자격 예심에 통과한 신고인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입찰해야 한다. **제20조** 입찰자 자격 후심 방법으로 응찰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 개찰 후에 응찰 심사위원회에서 입찰서류에 규정한 표준과 방법으로 응찰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21조** 입찰자는 이미 공개한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에 대해 필요한 해석을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해석 또는 수정한 내용이 자격 예심신고서류나 응찰서류 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입찰자는 최소 자격 예심신고서류 제출 마감일 5일 전에 또는 최소 응찰 마감일 15일 전에 자격 예심서류나 응찰서류를 취득한 모든 응찰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3일 또는 15일 미만인 경우 입찰자는 자격 예심신고서류나 응찰서류 제출일자를 연기해야 한다. **제22조** 응찰희망자나 기타 이해관련자가 자격 예심서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격 예심신고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 마감일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접수일로부터 3일내에 회답해야 하며 회답하기 전에는 입찰응찰활동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제23조** 입찰자가 작성한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의 내용이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였고 공개, 공평, 공정, 성실신의의 원칙에 배치되어 자격 예심결과나 응찰희망자의 응찰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입찰프로젝트의 입찰자는 자격 예심서류와 입찰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입찰해야 한다. **제24조** 입찰자가 입찰프로젝트에 대해 단계를 나누는 경우 입찰응찰법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단계를 나눈다고 해서 응찰희망자를 제한하거나 매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단계를 나눈다는 방패로 입찰을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응찰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응찰유효기간은 응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6조** 입찰자가 입찰서류에서 응찰자에게 응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한 경우 응찰보증금은 입찰프로젝트 예산가격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응찰 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응찰 유효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내 응찰단위가 현찰이나 수표형식으로 응찰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본구좌에서 전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응찰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한다. **제27조** 입찰자는 자체로 입찰의 최저기준 규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1개 입찰프로젝트에 최저기준 1개만 정할 수 있다. 입찰 최저기준은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입찰 최저기준을 작성하는 수임 중개기구에서는 입찰 최저기준 작성에 참가한 프로젝트에 응찰하지 못하며 당해 프로젝트 응찰자의 응찰서류를 작성하거나 자문을 제공하지 못한다.입찰자가 최고 응찰 한정가격을 정한 경우 입찰서류에 최고 응찰 한정가격이나 최고 응찰 한정가격 계산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입찰자가 최저 응찰가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28조** 입찰자가 1개 또는 일부분 응찰자의 프로젝트 현장답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입찰자가 합법적으로 공사 및 공사건설과 관련한 화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총괄 도급입찰을 할 수 있다. 임시견적 형태로 총괄 도급범위에 포함시킨 공사, 화물, 서비스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 범위에 속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규모표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한다.전항에서 임시견적이라 함은 총괄 도급입찰 시에 견적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자가 입찰서류에 임시로 견적을 낸 공사, 화물, 서비스의 금액을 말한다. **제30조** 기술이 복잡하거나 기술규격을 정밀하게 정할 수 없는 프로젝트는 입찰자가 2개 단계로 나누어 입찰할 수 있다. 제1단계. 응찰자가 입찰공고나 응찰초청서의 요구에 따라 견적이 없는 기술건의를 제출하고 입찰자는 응찰자가 제출한 기술건의에 의거하여 기술 표준과 요구를 확정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한다. 제2단계. 입찰자가 제1단계에서 기술건의를 제출한 응찰자에게 입찰서류를 제공하고 응찰자는 입찰서류 요구에 의거하여 최종기술방안과 응찰가격을 포함한 응찰서류를 제출한다. 입찰자가 응찰자의 응찰보증금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입찰자가 입찰을 종지하는 경우 즉시 공고를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초청을 받았거나 이미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를 취득한 응찰희망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미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매출하였거나 응찰보증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수취한 자격 예심서류 비용, 입찰서류 비용 및 수취한 응찰보증금 및 해당금액의 동기 은행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제32조** 입찰자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응찰희망자나 응찰자를 제한하고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입찰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응찰희망자나 응찰자를 제한하고 배척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동일 입찰프로젝트에서 응찰희망자나 응찰자에게 부동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한 경우(2) 입찰프로젝트의 구체특점이나 실지 수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이행과 무관한 자격, 기술, 상무 조건을 설정한 경우(3)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 업계의 실적, 수상종목을 득점조건이나 낙찰조건으로 정한 경우(4) 응찰희망자나 응찰자에 대해 부동한 자격심사를 하거나 부동한 응찰평가기준을 정한 경우(5) 특정 특허, 브랜드, 원산지 또는 공급업체로 한정하거나 지정한 경우 (6)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응찰희망자나 응찰자의 소유제나 회사 조직형태를 한정한 경우 (7)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응찰희망자나 응찰자를 제한하고 배척한 경우. **제3장 응 찰****제3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하여 응찰하는 응찰자는 지역, 부문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불법간섭하지 못한다. **제34조** 입찰자와의 이해관계로 하여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응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단위의 책임자가 동일인이거나 지주관계나 관리관계가 있는 부동한 단위는 동일 입찰단계 응찰 또는 단계를 나누지 않은 동일 입찰 프로젝트의 응찰에 참가하지 못한다.앞 2개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입찰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35조** 응찰자가 이미 제출한 응찰서류를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응찰마감일 전에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찰자가 응찰보증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응찰자의 서면 철회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5일내에 반환해야 한다. 응찰 마감일 후에 응찰자가 응찰서류를 철회하는 경우 입찰자가 응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자격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응찰자가 제출하는 응찰서류, 그리고 기간을 경과하여 송달하였거나 입찰서류에서 제출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밀봉하지 않은 응찰서류는 입찰자가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류의 송달시관과 밀봉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검사에 준비해야 한다.**제37조** 입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 초청장에 콤비나트의 응찰 접수여부를 밝혀야 한다. 입찰자가 콤비나트의 응찰을 접수하고 자격 예심을 하는 경우 그 콤비나트는 반드시 자격 예심신고서류 제출 전에 구성한 콤비나트여야 한다. 자격 예심 후에 콤비나트를 증감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응찰은 무효로 한다. 콤비나트 각 구성측이 동일 입찰프로젝트에 독자의 명의로 응찰하거나 여타 콤비나트에 참가하여 응찰하는 경우 관련 응찰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38조** 응찰자에게 합병, 분립, 파산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입찰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응찰자가 더는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이 없거나 그의 응찰로 하여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 그의 응찰은 무효로 한다. **제39조** 응찰자의 상호내통 응찰을 금지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응찰자의 상호내통 응찰로 인정한다. (1) 응찰자 간에 응찰견적 등 응찰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상황 (2) 응찰자 간에 낙찰자를 약속하는 상황(3) 응찰자 간에 일부 응찰자가 응찰이나 낙찰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상황 (4) 동일 그룹, 협회, 상회 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조직의 요구에 따라 협동 응찰하는 상황(5) 응찰자 간에 낙찰을 위해 또는 특정 응찰자를 배척하기 위해 기타 공동행위를 취하는 상황. **제40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응찰자의 상호내통 응찰로 간주한다. (1) 부동한 응찰자의 응찰서류를 동일 단위나 개인이 작성한 상황(2) 부동한 응찰자가 동일 단위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응찰사항을 처리하게 하는 상황(3) 부동한 응찰자의 응찰서류에 명기한 프로젝트 관리자구성이 동일인인 상황(4) 부동한 응찰자의 응찰서류가 이상하게 일치하거나 견적의 차이가 규율적인 상황(5) 부동한 응찰자의 응찰서류를 상호 혼돈하여 봉인한 상황(6) 동일한 응찰자의 보증금이 동일단위나 동일인의 구좌에서 대체한 상황. **제41조** 입찰자가 응찰자와 내통한 응찰을 금지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찰자가 응찰자와 내통한 응찰로 간주한다.(1) 입찰자가 개찰 전에 응찰서류를 개봉하여 관련정보를 여타응찰자에게 누설한 상황(2) 입찰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응찰자에게 입찰 최저기준가격,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등 정보를 누설한 상황 (3) 입찰자가 응찰자에게 응찰견적을 낮추거나 높이라고 명시하거나 암시한 상황(4) 입찰자가 응찰자에게 응찰서류 철환 또는 수정의사를 전달한 상황 (5) 입찰자가 응찰자에게 특정 응찰자의 낙찰을 협조하라고 명시하거나 암시한 상황(6) 입찰자가 특정 응찰자의 낙찰을 위해 응찰자를 상대하여 기타 내통행위를 한 상황**제42조** 양수, 임차 등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서, 자질증서로 응찰하는 경우는 입찰응찰법 제33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명의로 응찰하는 행위에 속한다. 응찰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찰응찰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기타방식의 사기행위에 속한다. (1) 위조, 변조한 허가증을 사용하는 상황(2) 허위 재무상황이나 실적을 제공하는 상황(3) 허위 프로젝트 책임자나 주요 기술자의 약력, 근로관계 증명서를 제공하는 상항(4) 허위 신용상황을 제공하는 상황 (5) 기타 허위조작행위. **제43조** 자격 예심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인은 응찰자에 관한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개찰과 응찰평가, 낙찰****제44조**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규정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개찰해야 한다. 응찰자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개찰하지 못하며 입찰자가 다시 입찰해야 한다. 개찰에 이의가 있는 응찰자는 개찰현장에서 제출하고 입찰자는 즉석에서 회답하는 동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45조** 국가에서는 통일적인 응찰평가전문가의 전문분야 분류표준 관리방법을 실시한다. 구체표준과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부서에서는 응찰평가 전무가 종합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46조** 입찰응찰법 제3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 입찰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평가위원회 전문가 구성원은 응찰평가 전문가베이스의 관련 전문가명부에서 임의추출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명시 또는 암시 등 어떤 방법으로 응찰평가위원회에 참가할 전문가구성원을 지정하거나 변형지정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입찰응찰법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확정한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지 못한다. 응찰평가위원회 전문가구성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응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하여 기피해야 한다.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는 규정 직책분공에 따라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확정방식, 응찰평가 전문가 추출 및 평가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행정감독부서의 직원은 당해 부서에서 감독하는 프로젝트의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47조** 입찰응찰법 제37조 제3항에서 특수 입찰프로젝트라 함은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하거나 국가에서 특수요구가 있는, 임의 추출방식으로 확정한 전문거로서는 응찰평가 작업을 담당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48조** 입찰자가 응찰평가위원회에 응찰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의 경향성이나 특정 응찰자를 배척하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입찰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기술의 복잡성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합리한 평가시일을 확정해야 한다. 응찰평가 위원회구성원 중 1/3 이상이 응찰평가일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적당히 연장해야 한다. 응찰평가 과정에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기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자의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건강 등 원인으로 응찰평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대체해야 한다. 대체된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내놓은 평가결론은 무효이며 대체한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다시 평가해야 한다. **제49조**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은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고 입찰서류에서 정한 응찰평가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응찰서류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서류에 규정하지 않은 응찰평가 기준과 방법은 응찰평가의 의거로 될 수 없다.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사사로 응찰자와 접촉하거나, 응찰자의 재물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입찰자에게 낙찰자 확정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거나, 어떤 단위나 개인이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향성 의견 또는 특정 응찰자를 배척할 데 대한 요구를 들거나, 직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입찰프로젝트의 입찰 최저 기준견적을 설정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개찰 시에 공포해야 한다. 입찰 최저 기준견적은 참고할 수 있을 뿐 응찰견적의 입찰 최저 기준견적 접근 여부가 낙찰조건으로 될 수 없으며 입찰 최저 기준견적에 대비한 응찰견적의 상하 유동범위가 응찰부정조건으로 될 수도 없다. **제51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응찰평가위원회에서 응찰을 부정해야 한다. (1) 응찰서류에 응찰단위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단위책임자가 서명하지 않은 상황(2) 응찰하는 콤비나트가 공동응찰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3) 응찰자가 국가의 규정 또는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4) 동일 응찰자가 2부 이상의 부동한 응찰서류나 응찰견적을 제출한 상황, 단 입찰서류에서 예비응찰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응찰견적이 원가보다 낮거나 입찰서류에서 설정한 최고응찰견적 한계를 넘은 상황(6) 응찰서류에서 입찰서류의 실질적 요구와 조건에 응하지 않은 상황(7) 응찰자에게 내통응찰, 허위조각,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가 있는 상황. **제52조** 응찰서류에 의미가 명확하지 못한 내용, 확실한 오자나 계산착오가 있고 응찰평가위원회에서 응찰자가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찰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응찰자의 해명, 설명은 서면으로 하되 응찰서류의 범위를 초월하지 말고 응찰서류의 실질내용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응찰평가위원회에서 응찰자에게 해명과 설명을 유도해서는 아니 되며 응찰자가 주동으로 제출하는 해명과 설명을 접수해도 아니 된다. **제53조** 응찰평가를 완료하면 응찰평가 위원회에서 입찰자에게 응찰평가 보고서와 낙찰 후보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낙찰 후보자는 3명을 초과하지 않고 순위를 밝혀야 한다. 응찰 평가보고서에는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응찰평가 결과에 대해 부동한 의견이 있는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은 부동한 의견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응찰 평가보고서에 그 부동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응찰 평가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부동한 의견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입찰자가 응찰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내에 낙찰 후보자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간은 3일 이상이여야 한다. 응찰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낙찰 후보자 공시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내에 회답하고 회답하기 전까지는 입찰응찰활동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제55조** 국유자금이 지주지위나 주도지위에 있고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입찰자는 제1순위의 낙찰 후보자를 낙찰자로 해야 한다. 제1순위의 낙찰 후보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입찰서류 요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 사출되어 낙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가 응찰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낙찰 후보자명단에서 순위에 따라 다음 후보자를 낙찰자로 선택하거나 다시 입찰할 수도 있다. **제56조** 낙찰자의 경영, 재무 등 상황에 보다 큰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불법행위가 존재하여 입찰자가 계약이행에 영향이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낙찰통지서 발송전에 원 응찰평가위원회에서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57조** 입찰자는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에 의거하여 낙찰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표적, 가격, 품질, 이행기한 등 주요조항은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응찰서류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입찰자와 낙찰자가 다시 계약의 실질내용에 배치하는 기타 합의서를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입찰자는 늦어도 서면계약서 체결 후 5일내에 낙찰자와 낙찰하지 못한 응찰자에게 응찰보증금과 동기 은행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제58조** 입찰서류에서 낙찰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경우 낙찰자는 입찰서의 요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낙찰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9조** 낙찰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여 낙찰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낙찰자는 낙찰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낙찰프로젝트를 분해하여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아니 된다. 낙찰자는 계약의 약정이나 입찰자의 동의를 받고 낙찰프로젝트의 일부 비 주체, 비 관건적인 작업을 하청하여 완성하게 할 수 있다. 하청을 맡은 자는 반드시 상응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하며 재하청하지 못한다. 낙찰자는 하청한 프로젝트에 대해 입찰자 앞에 책임져야 하며 하청을 맡은 자는 하청 프로젝트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장 투서와 처리****제60조** 입찰응찰활동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응찰자나 그 이해관계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일내에 관련 행정부서에 투서할 수 있다. 투서는 명확한 청구와 필요한 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 제22조, 제44조, 제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투서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찰자에게 이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 회답기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시효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61조** 투서인이 동일사항을 2개 이상 수리권한이 있는 행정감독부서에 투서한 경우 제일 먼저 투서를 접수한 행정감독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행정감독부서에서는 투서 입수일로부터 3개 근무일내에 투서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투서 접수일로부터 30개 근무일내에 서면 처리결정을 해야 한다. 검사, 검측, 감정, 전문가의 평의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투서인이 사실을 날조하고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수단으로 취득한 증명자료에 의거하여 투서한 경우 행정감독부서에서 기각해야 한다. **제62조** 투서를 처리하는 행정감독부서는 서류를 사열, 복재하고 관련 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단위와 관련자는 이를 협조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행정감독부서에서 입찰응찰활동의 잠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감독부서의 담당직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제63조** 입찰자에게 응찰희망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하기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입찰응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로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미디어에 자격 예심공고나 입찰공고를 발표하지 않은 행위 (2) 부동한 미디어에 발표한 동일 입찰프로젝트의 자격 예심공고나 입찰공고의 내용이 불일치하여 응찰희망자의 자격 예심신고나 응찰에 영향을 미친 행위.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 예심공고나 입찰공고를 발표하지 않아 입찰회피를 조성한 경우에는 입찰응찰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4조** 입찰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데고 초청입찰을 한 상황(2) 입찰서류, 자격 예심서류의 매출, 확인, 수정 시한 또는 자격 예심 신고서류, 응찰서류 제출시한 확정이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3) 자격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단위나 개인을 응찰에 참가하게 한 상황(4) 거부해야 하는 응찰서류를 접수한 상황. 입찰자에게 전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5조** 입찰 대리기구에서 자기가 대리하는 입찰프로젝트에 응찰하거나 응찰을 대리하거나 당해 프로젝트의 응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최저 기준가격 작성을 수임한 중개기구가 입찰 최저 기준가격을 작성한 프로젝트에 응찰하거나 당해 프로젝트의 응찰자의 응찰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자문을 제공한 경우 입찰응찰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입찰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응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을 수취하거나 규정에 따라 응찰보증금과 그 동기 은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7조** 응찰자가 상호 내통하여 응찰하거나 입찰자와 내통하여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가 입찰자나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에게 증뢰하여 낙찰을 사취한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응찰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응찰자가 낙찰하지 못한 경우 단위의 벌금액은 입찰프로젝트의 계약금액에 비추어 입찰응찰법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응찰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찰응찰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정상이 심각한 행위에 속하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1년 내지 2년간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자격을 취소한다. (1) 증뢰하여 낙찰을 사취한 행위(2) 3년 내에 2회 이상 내통하여 응찰한 행위(3) 내통응찰 행위로 하여 입찰자, 여타 응찰자 또는 국가, 단체, 공민의 합법적 이익을 손상하였고 경제적 손실이 30만 위안 이상인 행위 (4) 정상이 심각한 기타 내통응찰 행위. 응찰자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벌 집행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당해 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내통응찰이나 증뢰하여 낙찰을 사취한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법률, 법규에서 내통응찰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8조** 응찰자가 타인의 명의로 응찰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낙찰을 사취한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응찰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자로서 낙찰하지 못한 경우 단위의 벌금액은 응찰프로젝트 계약금 액수에 따라 입찰응찰법에서 규정한 비율로 계산한다. 응찰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찰응찰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상이 심각한 행위에 속하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1년 내지 3년 내에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자격을 취소한다. (1) 자격, 자질증서나 기타 인가증서를 위조, 변조하여 낙찰을 사취한 행위 (2) 3년 내에 2차 이상 타인의 명의로 응찰한 행위(3) 허위조작으로 낙찰을 사취하여 입찰자에게 30만 위안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조성한 행위 (4) 허위조작으로 낙찰을 사취한 기타 정상이 심각한 행위. 응찰자가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벌 집행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당해 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허위조작으로 낙찰을 사취한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제69조** 자격증서나 자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하여 응찰하게 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0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을 확정, 교체하지 않아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처벌한다. 불법으로 확정했거나 교체한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의 평가결론은 무효이며 법에 따라 다시 심의해야 한다. 국가 공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선임을 간섭한 경우 이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에게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며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담임자격을 취소한다. (1) 기피해야 하는 데도 기피하지 않은 행위(2) 자의로 직무를 이탈한 행위(3)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응찰평가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는 해위(4) 사사로 응찰자와 접촉하는 행위(5) 입찰자에게 낙찰자 확정의향을 문의하거나 어떤 단위나 개인이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향성 의견이나 특정 응찰자를 배척하는 요구를 듣는 행위(6) 법에 따라 부정해야 하는 응찰에 대해 부결의견을 제의하지 않는 행위(7) 응찰자에게 암시하거나 응찰자를 유도하여 해명하고 설명하게 하거나 주동적으로 응찰자가 한 해명이나 설명을 접수하는 행위(8) 직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는 기타해위. **제72조**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응찰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재물을 몰수하고 3,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담임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다시는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응찰평가에 참가하지 못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낙찰프로젝트 금액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낙찰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상황(2) 낙찰자 확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상황(3) 낙찰통지서를 발송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결과를 변경한 상황(4)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5) 계약 체결 시에 낙찰자에게 부대조건을 제출한 상황. **제74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에 입찰자에게 부대조건을 제출하거나 입찰서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응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낙찰자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낙찰프로젝트 금액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5조** 입찰자와 낙찰자가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응찰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주요조항이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응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입찰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에 배치되는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낙찰 프로젝트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6조** 낙찰자가 낙찰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낙찰프로젝트를 분해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낙찰프로젝트의 일부 주체나 관건 작업을 타인에게 하청하거나 하청인이 다시 재 하청하는 경우 그 양도, 하청을 무효로 하고 양도, 하청 프로젝트 금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불법소득 몰수처벌을 병과하고 조업중지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말소한다. **제77조** 응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사실을 날조하고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수단으로 취득한 증명자료로 투서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입찰자가 규정대로 이의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입찰응찰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못하여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 조례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8조** 입찰직업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원이 입찰업무 수행과정에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업무를 중지하게 하며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입찰 직업자격을 취소한다. **제79조** 국가에서는 입찰응찰 신용제도를 수립한다. 관련 행정감독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입찰자, 입찰대리기구, 응찰자,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 등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제80조** 프로젝트 심사, 확인 부서가 프로젝트의 입찰범위, 입찰방식, 입찰 조직형태를 법에 따라 심사,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행정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 위반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며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투서를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입찰응찰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결정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프로젝트 심사, 확인부서와 관련 행정감독부서 담당직원이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 직권남용행위, 직무유기행위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1조** 국가 공직자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명시 또는 암시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찰응찰활동을 불법 간섭하는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징계처벌 또는 엄중 징계서벌을 주고 정상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직급을 낮추거나 면직처벌을 주며 정상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명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도 입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행위(2) 응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나 입찰자에게 그가 지정한 응찰자를 낙찰 후보자로 또는 낙찰자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응찰평가활동에 대한 불법간섭을 진행하여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타방법으로 입찰응찰활동에 대한 불법간섭을 하는 행위.**제82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응찰활동에서 입찰응찰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보완조치를 취하여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찰, 응찰, 낙찰을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입찰하거나 응찰평가를 해야 한다. **제7장 부 칙****제83조** 입찰응찰협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제정한 정관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과 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 **제84조** 정부조달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정부조달에 속하는 화물과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85조** 이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613号 　　《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实施条例》已经2011年11月30日国务院第183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2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一一年十二月二十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招标投标活动，根据《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以下简称招标投标法），制定本条例。**第二条** 招标投标法第三条所称工程建设项目，是指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前款所称工程，是指建设工程，包括建筑物和构筑物的新建、改建、扩建及其相关的装修、拆除、修缮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是指构成工程不可分割的组成部分，且为实现工程基本功能所必需的设备、材料等；所称与工程建设有关的服务，是指为完成工程所需的勘察、设计、监理等服务。**第三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工程建设项目的具体范围和规模标准，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施行。**第四条** 国务院发展改革部门指导和协调全国招标投标工作，对国家重大建设项目的工程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检查。国务院工业和信息化、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铁道、水利、商务等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有关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指导和协调本行政区域的招标投标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招标投标活动实施监督，依法查处招标投标活动中的违法行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其所属部门有关招标投标活动的监督职责分工另有规定的，从其规定。财政部门依法对实行招标投标的政府采购工程建设项目的预算执行情况和政府采购政策执行情况实施监督。监察机关依法对与招标投标活动有关的监察对象实施监察。**第五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实际需要，建立统一规范的招标投标交易场所，为招标投标活动提供服务。招标投标交易场所不得与行政监督部门存在隶属关系，不得以营利为目的。国家鼓励利用信息网络进行电子招标投标。**第六条** 禁止国家工作人员以任何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 **第二章 招 标** **第七条** 按照国家有关规定需要履行项目审批、核准手续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其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应当报项目审批、核准部门审批、核准。项目审批、核准部门应当及时将审批、核准确定的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通报有关行政监督部门。**第八条** 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应当公开招标；但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邀请招标：（一）技术复杂、有特殊要求或者受自然环境限制，只有少量潜在投标人可供选择；（二）采用公开招标方式的费用占项目合同金额的比例过大。有前款第二项所列情形，属于本条例第七条规定的项目，由项目审批、核准部门在审批、核准项目时作出认定；其他项目由招标人申请有关行政监督部门作出认定。**第九条** 除招标投标法第六十六条规定的可以不进行招标的特殊情况外，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不进行招标：（一）需要采用不可替代的专利或者专有技术；（二）采购人依法能够自行建设、生产或者提供；（三）已通过招标方式选定的特许经营项目投资人依法能够自行建设、生产或者提供；（四）需要向原中标人采购工程、货物或者服务，否则将影响施工或者功能配套要求；（五）国家规定的其他特殊情形。招标人为适用前款规定弄虚作假的，属于招标投标法第四条规定的规避招标。**第十条** 招标投标法第十二条第二款规定的招标人具有编制招标文件和组织评标能力，是指招标人具有与招标项目规模和复杂程度相适应的技术、经济等方面的专业人员。**第十一条** 招标代理机构的资格依照法律和国务院的规定由有关部门认定。国务院住房城乡建设、商务、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等部门，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招标代理机构依法实施监督管理。**第十二条** 招标代理机构应当拥有一定数量的取得招标职业资格的专业人员。取得招标职业资格的具体办法由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制定。**第十三条** 招标代理机构在其资格许可和招标人委托的范围内开展招标代理业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涉。招标代理机构代理招标业务，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关于招标人的规定。招标代理机构不得在所代理的招标项目中投标或者代理投标，也不得为所代理的招标项目的投标人提供咨询。招标代理机构不得涂改、出租、出借、转让资格证书。**第十四条** 招标人应当与被委托的招标代理机构签订书面委托合同，合同约定的收费标准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第十五条** 公开招标的项目，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发布招标公告、编制招标文件。招标人采用资格预审办法对潜在投标人进行资格审查的，应当发布资格预审公告、编制资格预审文件。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资格预审公告和招标公告，应当在国务院发展改革部门依法指定的媒介发布。在不同媒介发布的同一招标项目的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的内容应当一致。指定媒介发布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境内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不得收取费用。编制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资格预审文件和招标文件，应当使用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有关行政监督部门制定的标准文本。**第十六条** 招标人应当按照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规定的时间、地点发售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的发售期不得少于5日。招标人发售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收取的费用应当限于补偿印刷、邮寄的成本支出，不得以营利为目的。**第十七条** 招标人应当合理确定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时间，自资格预审文件停止发售之日起不得少于5日。**第十八条** 资格预审应当按照资格预审文件载明的标准和方法进行。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组建资格审查委员会审查资格预审申请文件。资格审查委员会及其成员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有关评标委员会及其成员的规定。**第十九条** 资格预审结束后，招标人应当及时向资格预审申请人发出资格预审结果通知书。未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不具有投标资格。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少于3个的，应当重新招标。**第二十条** 招标人采用资格后审办法对投标人进行资格审查的，应当在开标后由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标准和方法对投标人的资格进行审查。**第二十一条** 招标人可以对已发出的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进行必要的澄清或者修改。澄清或者修改的内容可能影响资格预审申请文件或者投标文件编制的，招标人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截止时间至少3日前，或者投标截止时间至少15日前，以书面形式通知所有获取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不足3日或者15日的，招标人应当顺延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或者投标文件的截止时间。**第二十二条** 潜在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对资格预审文件有异议的，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截止时间2日前提出；对招标文件有异议的，应当在投标截止时间10日前提出。招标人应当自收到异议之日起3日内作出答复；作出答复前，应当暂停招标投标活动。**第二十三条** 招标人编制的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内容违反法律、行政法规的强制性规定，违反公开、公平、公正和诚实信用原则，影响资格预审结果或者潜在投标人投标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应当在修改资格预审文件或者招标文件后重新招标。**第二十四条** 招标人对招标项目划分标段的，应当遵守招标投标法的有关规定，不得利用划分标段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得利用划分标段规避招标。**第二十五条** 招标人应当在招标文件中载明投标有效期。投标有效期从提交投标文件的截止之日起算。**第二十六条** 招标人在招标文件中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投标保证金不得超过招标项目估算价的2%。投标保证金有效期应当与投标有效期一致。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境内投标单位，以现金或者支票形式提交的投标保证金应当从其基本账户转出。招标人不得挪用投标保证金。**第二十七条** 招标人可以自行决定是否编制标底。一个招标项目只能有一个标底。标底必须保密。接受委托编制标底的中介机构不得参加受托编制标底项目的投标，也不得为该项目的投标人编制投标文件或者提供咨询。招标人设有最高投标限价的，应当在招标文件中明确最高投标限价或者最高投标限价的计算方法。招标人不得规定最低投标限价。**第二十八条** 招标人不得组织单个或者部分潜在投标人踏勘项目现场。**第二十九条** 招标人可以依法对工程以及与工程建设有关的货物、服务全部或者部分实行总承包招标。以暂估价形式包括在总承包范围内的工程、货物、服务属于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范围且达到国家规定规模标准的，应当依法进行招标。前款所称暂估价，是指总承包招标时不能确定价格而由招标人在招标文件中暂时估定的工程、货物、服务的金额。**第三十条** 对技术复杂或者无法精确拟定技术规格的项目，招标人可以分两阶段进行招标。第一阶段，投标人按照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的要求提交不带报价的技术建议，招标人根据投标人提交的技术建议确定技术标准和要求，编制招标文件。第二阶段，招标人向在第一阶段提交技术建议的投标人提供招标文件，投标人按照招标文件的要求提交包括最终技术方案和投标报价的投标文件。招标人要求投标人提交投标保证金的，应当在第二阶段提出。**第三十一条** 招标人终止招标的，应当及时发布公告，或者以书面形式通知被邀请的或者已经获取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潜在投标人。已经发售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或者已经收取投标保证金的，招标人应当及时退还所收取的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的费用，以及所收取的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第三十二条** 招标人不得以不合理的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招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以不合理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一）就同一招标项目向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提供有差别的项目信息；（二）设定的资格、技术、商务条件与招标项目的具体特点和实际需要不相适应或者与合同履行无关；（三）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以特定行政区域或者特定行业的业绩、奖项作为加分条件或者中标条件；（四）对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采取不同的资格审查或者评标标准；（五）限定或者指定特定的专利、商标、品牌、原产地或者供应商；（六）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非法限定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的所有制形式或者组织形式；（七）以其他不合理条件限制、排斥潜在投标人或者投标人。 **第三章 投 标** **第三十三条** 投标人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不受地区或者部门的限制，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涉。**第三十四条** 与招标人存在利害关系可能影响招标公正性的法人、其他组织或者个人，不得参加投标。单位负责人为同一人或者存在控股、管理关系的不同单位，不得参加同一标段投标或者未划分标段的同一招标项目投标。违反前两款规定的，相关投标均无效。**第三十五条** 投标人撤回已提交的投标文件，应当在投标截止时间前书面通知招标人。招标人已收取投标保证金的，应当自收到投标人书面撤回通知之日起5日内退还。投标截止后投标人撤销投标文件的，招标人可以不退还投标保证金。**第三十六条** 未通过资格预审的申请人提交的投标文件，以及逾期送达或者不按照招标文件要求密封的投标文件，招标人应当拒收。招标人应当如实记载投标文件的送达时间和密封情况，并存档备查。**第三十七条** 招标人应当在资格预审公告、招标公告或者投标邀请书中载明是否接受联合体投标。招标人接受联合体投标并进行资格预审的，联合体应当在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前组成。资格预审后联合体增减、更换成员的，其投标无效。联合体各方在同一招标项目中以自己名义单独投标或者参加其他联合体投标的，相关投标均无效。**第三十八条** 投标人发生合并、分立、破产等重大变化的，应当及时书面告知招标人。投标人不再具备资格预审文件、招标文件规定的资格条件或者其投标影响招标公正性的，其投标无效。**第三十九条** 禁止投标人相互串通投标。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投标人相互串通投标：（一）投标人之间协商投标报价等投标文件的实质性内容；（二）投标人之间约定中标人；（三）投标人之间约定部分投标人放弃投标或者中标；（四）属于同一集团、协会、商会等组织成员的投标人按照该组织要求协同投标；（五）投标人之间为谋取中标或者排斥特定投标人而采取的其他联合行动。**第四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视为投标人相互串通投标：（一）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由同一单位或者个人编制；（二）不同投标人委托同一单位或者个人办理投标事宜；（三）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载明的项目管理成员为同一人；（四）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异常一致或者投标报价呈规律性差异；（五）不同投标人的投标文件相互混装；（六）不同投标人的投标保证金从同一单位或者个人的账户转出。**第四十一条** 禁止招标人与投标人串通投标。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招标人与投标人串通投标：（一）招标人在开标前开启投标文件并将有关信息泄露给其他投标人;（二）招标人直接或者间接向投标人泄露标底、评标委员会成员等信息；（三）招标人明示或者暗示投标人压低或者抬高投标报价；（四）招标人授意投标人撤换、修改投标文件；（五）招标人明示或者暗示投标人为特定投标人中标提供方便；（六）招标人与投标人为谋求特定投标人中标而采取的其他串通行为。**第四十二条** 使用通过受让或者租借等方式获取的资格、资质证书投标的，属于招标投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以他人名义投标。投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以其他方式弄虚作假的行为：（一）使用伪造、变造的许可证件；（二）提供虚假的财务状况或者业绩；（三）提供虚假的项目负责人或者主要技术人员简历、劳动关系证明；（四）提供虚假的信用状况；（五）其他弄虚作假的行为。**第四十三条** 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的申请人应当遵守招标投标法和本条例有关投标人的规定。 **第四章 开标、评标和中标** **第四十四条** 招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规定的时间、地点开标。投标人少于3个的，不得开标；招标人应当重新招标。投标人对开标有异议的，应当在开标现场提出，招标人应当当场作出答复，并制作记录。**第四十五条** 国家实行统一的评标专家专业分类标准和管理办法。具体标准和办法由国务院发展改革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省级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组建综合评标专家库。**第四十六条** 除招标投标法第三十七条第三款规定的特殊招标项目外，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其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应当从评标专家库内相关专业的专家名单中以随机抽取方式确定。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明示、暗示等任何方式指定或者变相指定参加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非因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事由，不得更换依法确定的评标委员会成员。更换评标委员会的专家成员应当依照前款规定进行。评标委员会成员与投标人有利害关系的，应当主动回避。有关行政监督部门应当按照规定的职责分工，对评标委员会成员的确定方式、评标专家的抽取和评标活动进行监督。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不得担任本部门负责监督项目的评标委员会成员。**第四十七条** 招标投标法第三十七条第三款所称特殊招标项目，是指技术复杂、专业性强或者国家有特殊要求，采取随机抽取方式确定的专家难以保证胜任评标工作的项目。**第四十八条** 招标人应当向评标委员会提供评标所必需的信息，但不得明示或者暗示其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招标人应当根据项目规模和技术复杂程度等因素合理确定评标时间。超过三分之一的评标委员会成员认为评标时间不够的，招标人应当适当延长。评标过程中，评标委员会成员有回避事由、擅离职守或者因健康等原因不能继续评标的，应当及时更换。被更换的评标委员会成员作出的评审结论无效，由更换后的评标委员会成员重新进行评审。**第四十九条** 评标委员会成员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按照招标文件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客观、公正地对投标文件提出评审意见。招标文件没有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不得作为评标的依据。评标委员会成员不得私下接触投标人，不得收受投标人给予的财物或者其他好处，不得向招标人征询确定中标人的意向，不得接受任何单位或者个人明示或者暗示提出的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的要求，不得有其他不客观、不公正履行职务的行为。**第五十条** 招标项目设有标底的，招标人应当在开标时公布。标底只能作为评标的参考，不得以投标报价是否接近标底作为中标条件，也不得以投标报价超过标底上下浮动范围作为否决投标的条件。**第五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评标委员会应当否决其投标：（一）投标文件未经投标单位盖章和单位负责人签字；（二）投标联合体没有提交共同投标协议；（三）投标人不符合国家或者招标文件规定的资格条件；（四）同一投标人提交两个以上不同的投标文件或者投标报价，但招标文件要求提交备选投标的除外；（五）投标报价低于成本或者高于招标文件设定的最高投标限价；（六）投标文件没有对招标文件的实质性要求和条件作出响应；（七）投标人有串通投标、弄虚作假、行贿等违法行为。**第五十二条** 投标文件中有含义不明确的内容、明显文字或者计算错误，评标委员会认为需要投标人作出必要澄清、说明的，应当书面通知该投标人。投标人的澄清、说明应当采用书面形式,并不得超出投标文件的范围或者改变投标文件的实质性内容。评标委员会不得暗示或者诱导投标人作出澄清、说明，不得接受投标人主动提出的澄清、说明。**第五十三条** 评标完成后，评标委员会应当向招标人提交书面评标报告和中标候选人名单。中标候选人应当不超过3个，并标明排序。评标报告应当由评标委员会全体成员签字。对评标结果有不同意见的评标委员会成员应当以书面形式说明其不同意见和理由，评标报告应当注明该不同意见。评标委员会成员拒绝在评标报告上签字又不书面说明其不同意见和理由的，视为同意评标结果。**第五十四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自收到评标报告之日起3日内公示中标候选人，公示期不得少于3日。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结果有异议的，应当在中标候选人公示期间提出。招标人应当自收到异议之日起3日内作出答复；作出答复前，应当暂停招标投标活动。**第五十五条** 国有资金占控股或者主导地位的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招标人应当确定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为中标人。排名第一的中标候选人放弃中标、因不可抗力不能履行合同、不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履约保证金，或者被查实存在影响中标结果的违法行为等情形，不符合中标条件的，招标人可以按照评标委员会提出的中标候选人名单排序依次确定其他中标候选人为中标人，也可以重新招标。**第五十六条** 中标候选人的经营、财务状况发生较大变化或者存在违法行为，招标人认为可能影响其履约能力的，应当在发出中标通知书前由原评标委员会按照招标文件规定的标准和方法审查确认。**第五十七条** 招标人和中标人应当依照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签订书面合同，合同的标的、价款、质量、履行期限等主要条款应当与招标文件和中标人的投标文件的内容一致。招标人和中标人不得再行订立背离合同实质性内容的其他协议。招标人最迟应当在书面合同签订后5日内向中标人和未中标的投标人退还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第五十八条** 招标文件要求中标人提交履约保证金的，中标人应当按照招标文件的要求提交。履约保证金不得超过中标合同金额的10%。**第五十九条** 中标人应当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完成中标项目。中标人不得向他人转让中标项目，也不得将中标项目肢解后分别向他人转让。中标人按照合同约定或者经招标人同意，可以将中标项目的部分非主体、非关键性工作分包给他人完成。接受分包的人应当具备相应的资格条件，并不得再次分包。中标人应当就分包项目向招标人负责，接受分包的人就分包项目承担连带责任。 **第五章 投诉与处理** **第六十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认为招标投标活动不符合法律、行政法规规定的，可以自知道或者应当知道之日起10日内向有关行政监督部门投诉。投诉应当有明确的请求和必要的证明材料。就本条例第二十二条、第四十四条、第五十四条规定事项投诉的，应当先向招标人提出异议，异议答复期间不计算在前款规定的期限内。**第六十一条** 投诉人就同一事项向两个以上有权受理的行政监督部门投诉的，由最先收到投诉的行政监督部门负责处理。行政监督部门应当自收到投诉之日起3个工作日内决定是否受理投诉，并自受理投诉之日起30个工作日内作出书面处理决定；需要检验、检测、鉴定、专家评审的，所需时间不计算在内。投诉人捏造事实、伪造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的，行政监督部门应当予以驳回。**第六十二条** 行政监督部门处理投诉，有权查阅、复制有关文件、资料，调查有关情况，相关单位和人员应当予以配合。必要时，行政监督部门可以责令暂停招标投标活动。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对监督检查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应当依法予以保密。 **第六章 法律责任** **第六十三条** 招标人有下列限制或者排斥潜在投标人行为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一条的规定处罚：（一）依法应当公开招标的项目不按照规定在指定媒介发布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二）在不同媒介发布的同一招标项目的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的内容不一致，影响潜在投标人申请资格预审或者投标。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按照规定发布资格预审公告或者招标公告，构成规避招标的，依照招标投标法第四十九条的规定处罚。**第六十四条** 招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一）依法应当公开招标而采用邀请招标；（二）招标文件、资格预审文件的发售、澄清、修改的时限，或者确定的提交资格预审申请文件、投标文件的时限不符合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三）接受未通过资格预审的单位或者个人参加投标；（四）接受应当拒收的投标文件。招标人有前款第一项、第三项、第四项所列行为之一的，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第六十五条** 招标代理机构在所代理的招标项目中投标、代理投标或者向该项目投标人提供咨询的，接受委托编制标底的中介机构参加受托编制标底项目的投标或者为该项目的投标人编制投标文件、提供咨询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第六十六条** 招标人超过本条例规定的比例收取投标保证金、履约保证金或者不按照规定退还投标保证金及银行同期存款利息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第六十七条** 投标人相互串通投标或者与招标人串通投标的，投标人向招标人或者评标委员会成员行贿谋取中标的，中标无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三条的规定处罚。投标人未中标的，对单位的罚款金额按照招标项目合同金额依照招标投标法规定的比例计算。投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五十三条规定的情节严重行为，由有关行政监督部门取消其1年至2年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资格：（一）以行贿谋取中标；（二）3年内2次以上串通投标；（三）串通投标行为损害招标人、其他投标人或者国家、集体、公民的合法利益，造成直接经济损失30万元以上；（四）其他串通投标情节严重的行为。投标人自本条第二款规定的处罚执行期限届满之日起3年内又有该款所列违法行为之一的，或者串通投标、以行贿谋取中标情节特别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法律、行政法规对串通投标报价行为的处罚另有规定的，从其规定。**第六十八条** 投标人以他人名义投标或者以其他方式弄虚作假骗取中标的，中标无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照招标投标法第五十四条的规定处罚。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人未中标的，对单位的罚款金额按照招标项目合同金额依照招标投标法规定的比例计算。投标人有下列行为之一的，属于招标投标法第五十四条规定的情节严重行为，由有关行政监督部门取消其1年至3年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投标资格：（一）伪造、变造资格、资质证书或者其他许可证件骗取中标；（二）3年内2次以上使用他人名义投标；（三）弄虚作假骗取中标给招标人造成直接经济损失30万元以上；（四）其他弄虚作假骗取中标情节严重的行为。投标人自本条第二款规定的处罚执行期限届满之日起3年内又有该款所列违法行为之一的，或者弄虚作假骗取中标情节特别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第六十九条** 出让或者出租资格、资质证书供他人投标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十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不按照规定组建评标委员会，或者确定、更换评标委员会成员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违法确定或者更换的评标委员会成员作出的评审结论无效，依法重新进行评审。国家工作人员以任何方式非法干涉选取评标委员会成员的，依照本条例第八十一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第七十一条** 评标委员会成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禁止其在一定期限内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情节特别严重的，取消其担任评标委员会成员的资格：（一）应当回避而不回避；（二）擅离职守；（三）不按照招标文件规定的评标标准和方法评标；（四）私下接触投标人；（五）向招标人征询确定中标人的意向或者接受任何单位或者个人明示或者暗示提出的倾向或者排斥特定投标人的要求；（六）对依法应当否决的投标不提出否决意见；（七）暗示或者诱导投标人作出澄清、说明或者接受投标人主动提出的澄清、说明；（八）其他不客观、不公正履行职务的行为。**第七十二条** 评标委员会成员收受投标人的财物或者其他好处的，没收收受的财物，处3000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取消担任评标委员会成员的资格，不得再参加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评标；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十三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10‰以下的罚款；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一）无正当理由不发出中标通知书；（二）不按照规定确定中标人；（三）中标通知书发出后无正当理由改变中标结果；（四）无正当理由不与中标人订立合同；（五）在订立合同时向中标人提出附加条件。**第七十四条** 中标人无正当理由不与招标人订立合同，在签订合同时向招标人提出附加条件，或者不按照招标文件要求提交履约保证金的，取消其中标资格，投标保证金不予退还。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中标人，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10‰以下的罚款。**第七十五条** 招标人和中标人不按照招标文件和中标人的投标文件订立合同，合同的主要条款与招标文件、中标人的投标文件的内容不一致，或者招标人、中标人订立背离合同实质性内容的协议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可以处中标项目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第七十六条** 中标人将中标项目转让给他人的，将中标项目肢解后分别转让给他人的，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将中标项目的部分主体、关键性工作分包给他人的，或者分包人再次分包的，转让、分包无效，处转让、分包项目金额5‰以上10‰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可以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由工商行政管理机关吊销营业执照。**第七十七条** 投标人或者其他利害关系人捏造事实、伪造材料或者以非法手段取得证明材料进行投诉，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招标人不按照规定对异议作出答复，继续进行招标投标活动的，由有关行政监督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不能改正并影响中标结果的，依照本条例第八十二条的规定处理。**第七十八条** 取得招标职业资格的专业人员违反国家有关规定办理招标业务的，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暂停一定期限内从事招标业务；情节特别严重的，取消招标职业资格。**第七十九条** 国家建立招标投标信用制度。有关行政监督部门应当依法公告对招标人、招标代理机构、投标人、评标委员会成员等当事人违法行为的行政处理决定。**第八十条** 项目审批、核准部门不依法审批、核准项目招标范围、招标方式、招标组织形式的，对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有关行政监督部门不依法履行职责，对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规定的行为不依法查处，或者不按照规定处理投诉、不依法公告对招标投标当事人违法行为的行政处理决定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项目审批、核准部门和有关行政监督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八十一条** 国家工作人员利用职务便利，以直接或者间接、明示或者暗示等任何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特别严重的，依法给予开除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一）要求对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不招标，或者要求对依法应当公开招标的项目不公开招标；（二）要求评标委员会成员或者招标人以其指定的投标人作为中标候选人或者中标人，或者以其他方式非法干涉评标活动，影响中标结果；（三）以其他方式非法干涉招标投标活动。**第八十二条** 依法必须进行招标的项目的招标投标活动违反招标投标法和本条例的规定，对中标结果造成实质性影响，且不能采取补救措施予以纠正的，招标、投标、中标无效，应当依法重新招标或者评标。 **第七章 附 则** **第八十三条** 招标投标协会按照依法制定的章程开展活动，加强行业自律和服务。**第八十四条** 政府采购的法律、行政法规对政府采购货物、服务的招标投标另有规定的，从其规定。**第八十五条** 本条例自2012年2月1日起施行。 |